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특징에 대한 리해

김 희 성

선거제도는 해당 국가정치제도의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표징의 하나이다. 그것은 선거제도가 가장 중요한 국가법제도의 하나로서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정 치적권리와 자유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이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해주시고 발전완성시켜주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국가정치생활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는 존엄높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선거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서 모두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주권기관 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선진적인 선거입니다.》(《김일성전집》제39권 310폐지)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 를 구현하여 세워진 제도라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는 해당 사회제도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며 그것을 구현하여 세 워진다. 사회제도의 본성적요구는 그 사회가 어떤 계급 또는 사회적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사회인가 하는데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세워진 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다시말하여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을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조직하도록 선거의 기본원칙과 그 조직및 실시절차를 규제한 법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우선 주권기관을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들로 구성함으로써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선거제도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자면 주권기관을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꾸려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주권을 직접 대표하고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주권기관이기때문이다.

공화국선거제도의 전반내용은 바로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주권기관을 꾸리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공화국선거제도는 선거의 모든 공정과 계기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이것은 공화국선거제도가 규제하고있는 후보자추천절차와 방법을 놓고 서도 충분하게 설명할수 있다.

공화국선거제도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진행되는 선거의 특성과 인민대중을 국가주 권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 하게 함으로써 선거가 주권기관을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조직구성하며 국가주권을 반 석같이 다지는 정치적계기로 되게 한다.

공화국선거제도에서는 선거자들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며 추천된 후보자는 반드시 자격심의를 거쳐야만 정식 후보자로 등록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후보자자격심의는 주민거주지역 혹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진행한다. 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은 추천된 후보자가 인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있는가 하는것을 심의하며 이때 후보자는 회의에 참가한 참가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정식 후보자로 등록될수 있다. 이것은 후보자추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선거는 후보자추천절차와 확정의 전과정이 철저히 민주주의적원칙에 의하여 조직진행됨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주권기관을 자기 손으로 꾸리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제13기까지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들에서는 추천된 후보자들이 전체 선거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찬성을 받 았다. 이것은 공화국선거제도가 후보자추천에서 인민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주 권기관을 철저히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조직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인민대중을 국가주권 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선거제도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르죠아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말살하여 부르죠아계급의 독 재정권수립을 《합법화》하는 반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부르죠아선거는 일정한 정당이 출마시킨 후보자에 대한 선거로서 그것은 철저히 정당들사이의 집권경쟁으로 된다. 정당들사이의 집권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부르죠아선거에서 각 정당이 출마시키는 후보자는 어느 개별적정당의 대변자이지 인민의 대표는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한 계급,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거하는 선거를 경멸하며 선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민대중이 가지는 《선거권》은 가짜선거권으로 되며 그들이 선거를 통하여 얻는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또한 주권기관 대의원들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 도록 언제나 선거자들과 밀접한 런계를 가질데 대하여 규정한 선거제도이다.

주권기관의 인민적성격은 그 구성상특성과 함께 복무자적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 권기관이 참다운 인민의 주권기관으로 되자면 인민대중으로부터 선출된 대표들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일하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들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자면 대의원들 과 선거자들과의 관계가 명백히 규정되여야 한다.

공화국선거제도에서는 주권기관 대의원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기관 대의원들은 언제나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자기 사업에 대하 여 선거자들앞에서 책임지며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 언제 든지 소환할것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공화국선거제도는 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이 언제나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질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공화국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은 그 어떤 특권계급이 아니라 인민대중속에서 선출된 인 민대중의 한 성원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여줄것을 기대하여 그들 을 선출하였다. 그러므로 대의원들이 선거자들, 인민대중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는것은 응당한 의무로 된다.

공화국선거제도는 주권기관 대의원들이 언제나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인민대중앞에서 책임질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선거자들이 대의원소환권을 행사하는것을 통하여 보장된다. 대의원소환제도는 주권기관을 언제나 인민대중의 충복들로 꾸려 인민대중을 주권실현의 실제적주인으로 되도록 확고히 담보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회의원과 선거자들과의 호상관계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선거자와의 의원독립원칙이 실시되고있다.

부르죠아국회의 의원들은 자기 활동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지지 않으며 그들은 오직 대독점자본가들에게만 종속되여있을뿐이다. 그 어느 자본주의나라에서도 선거자들에 의한 의원소환권이 인정되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특징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옹호하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하 여 세워진 선거제도라는데 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존중하는가 하는것은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공화국선거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귀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원칙에서 선거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법화한 가장 혁명적인 선거제도이다.

선거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선거의 기본원칙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이다. 공화국선거제도가 규정하고있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은 단순히 선거의 진실성과 공정성, 정확성을 담보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으로서의 의미와 내용만을 가지는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선거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철저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귀중히여기고 존중하는 립장에서 결정할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선거제도는 선거의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공화국공민들에게 나이, 성별, 민족별, 재산과 지식정도, 거주기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공화국선거제도는 우선 선거나이를 가장 공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이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수 있게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12년제의무교육과 집단생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것으로 하여 정신육체적으로 빨리 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된다.

이로부터 공화국선거제도에서는 선거권부여나이를 17살로 규정하고있다.

이와 함께 선거할 나이와 선거받을수 있는 나이를 똑같이 하여 모든 공민들이 선거에 참가할뿐아니라 주권기관의 성원으로도 될수 있도록 그 권리를 확고히 담보한다. 그리하여 17살이 되는 모든 공민은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선거제도는 또한 성별과 민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공화국공민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해주고있다.

녀성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는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시하는가 아니면 무시하

는가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이다.

일반적으로 녀성들은 사회의 반수를 차지하고 사회발전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선거에서도 녀성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가 부여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 주의선거제도에서는 녀성들에 대한 선거권을 일정하게 제한하고있다.

공화국선거제도는 주체35(1946)년 7월 30일에 발포된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의 요구를 반영하여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꼭같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선거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주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라는것을 보여준다.

선거에서 민족별차이를 두지 않는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공민은 응당 선거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 공화국선거제도에서는 주체52(1963)년 10월 9일에 채택된 공화국국적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공화국국적을 가진 공민이라면 민족별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하여 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민족별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공화국선거제도는 또한 당별, 정견, 신앙의 차이 등 그 어떤 제한이 없이 모든 공민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군대에 복무하고있는 공민들에 대하여서도 선거권을 부여하고있다.

공화국선거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원칙에서 선거권부여의 대상을 넓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들과 행위 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자들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공화국선거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존중시하고 철저히 지켜주는 원칙에서 인민대중에게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고있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선언하고 있으나 그것은 여러가지 제한 및 보류조건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무시하는 반동적인 선거제도로 된다.

참으로 공화국선거제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이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참답게 실현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를 가지고있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할것이다.